#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29

2019. 3. 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 3. 6. 상정·의결)

#### Ⅱ. 제안설명의 요지(류 훈 주택건축본부장)

#### 1. 제안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적정 하게 관리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변경 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

#### 치·운용 조례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정함 (안 제6조 및 제7조)
- 세입: 학교용지 부담금, 가산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 세출 :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 3. 기타사항

- 관계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예산조치: 협의완료
- ○기 타
- 입법예고(2018. 11. 1. ~ 11. 21.) 결과: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Ⅲ. 검토보고 요지(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조항(안제5조)과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안제6조및제7조)을 신설하며, 지방세 징수관련 인용조문(안제2조및제4조)을 정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1) 「학교용지법」 개정사항 반영부분과

2) 「지방세징수법」 제정에 따른 근거조문 정비부분으로 구분되며, 현행 총 5개 조문은 7개 조문으로 개편되었음.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명「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	제명「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
에 관한 조례」	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납부고지서 발부시 <u>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u>	납부고지서 발부시 <u>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u>
<u>별지 제17호</u> 서식 준용	<u>별지 제8호</u> 서식 준용( <b>안 제2조</b> )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u>지방세기본법</u> 을 준용	관하여는 <u>지방세징수법</u> 을 준용( <b>안 제4조</b> )
_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항 신설(안 제5조)
부담금 사용규정	부담금 사용규정 삭제하고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정 신설(안 제6조, 제7조)

### □ 검토사항

#### 가. 제명변경

- 현행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음.
- 이는 학교용지법 개정에 따라 시·도에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해야 함에 따른 것으로 조례 제명을 내용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취지임.

#### 나. 조문의 정비(안 제2조. 제4조)

○ 안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안 제4조(지방세징수법 등 준용)는 현행 조례가 「지방세기본법」의 별지서식과 지방세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절차 규정을 준용해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기본법」 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2017.3.28.)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세입·세출 관련규정 신설(안 제5조~제7조)

- 지난 '17년 「학교용지법」이 개정¹)되면서, 특별회계를 각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제1항은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1항<sup>2</sup>)에 따라 특별 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제2항은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6항<sup>3</sup>)에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부분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한 자치구청 장 및 서울시 교육청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권한을 규정하였음.
  - 이는 특별회계의 설치·운용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세출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sup>1)</sup> 법률 제14604호, 2017.3.21. 일부개정 및 시행

<sup>2)</sup>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sup>3)</sup>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 및 제7조는 「학교용지법」 제5조의4(붙임1 참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세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세출로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규정한 것임.
- **종합하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관련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다만,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법」개정('17.3월) 후 2년가량 지난 시점에 서울시가 뒤늦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간 '정비사업 조합의 학교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용적률 완화 중복 적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부득이 조례개정 절차도 지연4)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여 행

<sup>4)</sup>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초과용적률)의 1/2에 해당하는 주택을 60㎡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 서울시에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토지분은 기부채납, 건축분에 대해서는 표준형건축비)(도시정비법 제54조 및 제55조,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0조)해 왔으나, 학교시설 또는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할 경우, 조합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 받음과 동시에 국토계획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46조(붙임1 참고)에 따른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적용 받아왔음.

따라서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초과용적률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은 증가하고 줄어든 초과용적률의 1/2만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게 되므로,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 것임.

이에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시설 기부채납 개선 검토"(시장방침 제208호,

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조례 개정지연으로 인해 특별회계 설치 및 세입·세출예산 의 편성도 함께 순연되어 법 개정(2017.3.21) 후 3년이 지난 2020년이 되어서야 특별회계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생략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Ⅷ.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sup>2017.11.15.)</sup> 를 수립하여 자치구 및 교육청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조례입안이 다소 지체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에는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를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 ② 부담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용지부담금이의신청서에 따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 제3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개발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제5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치구청장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부담금 면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교부하되, 매년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교부한다.
- 제4조(지방세징수법 등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부담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 ②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현황 및 학교용 지 등의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비용에 대해 매년 1월 말까지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보고받으 며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용지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세출(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담하는 경비, 학교 증축 경비,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 2.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경비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부과 대상에 대한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 년 2월 28일 이후에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조례 제3937호 「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의 시행일(2001년 11월 10일을 말한다) 이후 분양공고하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7397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일(2005년 3월 24일을 말한다)이후 부터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 적용한다.